

라이플자연식사격장의 구조·설비 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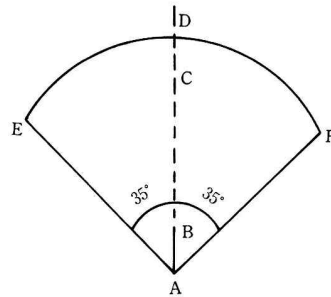
구분	구조·설비
사좌	1.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. 사대는 폭이 1.2미터 이상 길이가 2미터 이상일 것 3.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
표적까지의 거리	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25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일 것
표적까지의 지면	사격선과 표적까지의 지면에는 탄알을 튀게 할 물건이 없을 것
표적	1. 표적은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. 표적테는 목재여야 하며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금속류가 노출되지 않을 것
감적호	1. 표적조작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적호의 탄알에 맞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두께 3미터 이상(1미터 이상)의 토층으로 되어 있을 것 2. 감적호는 별표 4의 별도 9와 같은 구조로 할 것
이동표적의 주위 시설	이동표적 및 그 표적틀차 등의 주위는 두께 3미터 이상(1미터 이상)의 토층으로 할 것
탄알받이	표적후방에 토층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
보유부지	1. 별도에 표시된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하는 부지를 보유할 것 2.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 3.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 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·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험구역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위험구역은 제1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.
조명설비	1.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.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
그 밖의 사항	1. 사격장 주위에는 경계울타리,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할 것 2.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

3.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

비고: () 안의 숫자는 22구경 주변타격식 라이플총만을 사용하는 사격장에 적용한다.

[별표 5의 별도]

평면도



A	사대의 앞골선의 중심
B	표적의 중심
AB	발사하는 실탄의 최대도달거리
AD	AC의 거리의 125%
EF	A를 중심으로 하고 AD를 반경으로 하는 활테형
부채형AEF	위험구역
사격장의 위험구역은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은 각 사대의 위험구역 전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한다.	